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산정보관리관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및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및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34명(9급 3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9.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687”을 “3,706”으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3”을 “35”로, 방호서기보 “152”를 “155”로, 전산서기보 “20”을 “29”로, 운전서기보 “159”를 “160”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3”을 “3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6”을 “14”로, 사무운영서기보 “442”를 “412”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서기보 “3,687”을 “3,706”으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3”을 “35”로, 방호서기보 “152”를 “155”로, 전산서기보 “20”을 “29”로, 운전서기보 “159”를 “160”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3”을 “3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6”을 “14”로, 사무운영서기보 “442”를 “412”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6명 (4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2) 전산정보관리관 빅데이터센터	13명 (4급 1명, 5급 5명, 7급 7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종교인 소득세 과세	2명 (5급 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장려세제 운영	1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 (6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국세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종교인 소득세 과세(지방국세청)	105명 (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지방국세청)	96명 (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세무서)	73명 (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근로장려세제 집행(지방국세청)	363명 (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세무서)	68명 (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변칙 상속·증여 차단(세무서)	51명 (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 (지방국세청)	59명 (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0)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489명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보	<u>3,687</u>	<u>3,706</u>	+19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3</u>	<u>35</u>	+2
·	·	·	
방호서기보	<u>152</u>	<u>155</u>	+3
·	·	·	
전산서기보	<u>20</u>	<u>29</u>	+9
운전서기보	<u>159</u>	<u>160</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3</u>	<u>31</u>	-2
열관리운영서기보	<u>16</u>	<u>14</u>	-2
사무운영서기보	<u>442</u>	<u>412</u>	-30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보	<u>3,687</u>	<u>3,706</u>	+19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3</u>	<u>35</u>	+2
·	·	·	
방호서기보	<u>152</u>	<u>155</u>	+3
·	·	·	
전산서기보	<u>20</u>	<u>29</u>	+9
운전서기보	<u>159</u>	<u>160</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3</u>	<u>31</u>	-2
열관리운영서기보	<u>16</u>	<u>14</u>	-2
사무운영서기보	<u>442</u>	<u>412</u>	-30
·	·	·	